

축산물HACCP지정 수수료 규정



(사)축산물HACCP기준원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 HACCP적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금액과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지정이라 함은 축산물HACCP 적용작업장(농장)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서류검토, 현장실사를 말한다.

② 축산물 HACCP 지정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의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 제2항에 의하여 축산물HACCP기준원장(이하 “기준원장”이라 한다)이 정한 수수료 금액을 말한다.

③ 지정변경이라 함은 축산물HACCP적용작업장(농장)이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5항에 의하여 지정변경을 한 경우를 말한다.

④ 접수비라 함은 지정신청에 따른 접수 및 서류검토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.

⑤ 심사비라 함은 HACCP적용작업장(농장)의 심사 기술료를 말한다.

⑥ 출장비라 함은 지정 및 지정변경신청에 따른 현장실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.

⑦ 보완심사라 함은 심사 결과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심사를 말한다.

제3조(수수료구성) 수수료는 접수비, 심사비, 출장비로 구성된다.

제4조(수수료부과대상)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과한다.

1. 지정신청
2. 지정변경신청

제5조(수수료) ① 제4조와 관련된 지정 및 변경 수수료는 [별표 1호]와 같다.

② 출장비는 [별표 2호]와 같으며 지정 및 보완심사에 부과하고 지정변경신청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한다.

제6조(재신청수수료)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재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지정신청에 준하여 부과한다.

제7조의1(수수료 납부) 축산물 HACCP적용작

업장(농장) 지정신청자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)는 지정신청시 수수료를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무통장입금자는 접수자의 입금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.


제7조의2(수수료의 납입 방법 및 납부확인) ① 지정 및 지정변경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입하되, 기준원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별지서식 제1호의 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납입하여야 한다.

②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는 자는 지정수수료 납입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서 없이 직접 납입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2호의 지정수수료납입영수증을 발급 송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수료의 처리) 제4조 및 제7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현장실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신청자가 접수 취소를 요구할 경우 접수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.

- 부 칙 -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장비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) 출장비는 2008년 1월 1일부터 부과한다. 

[별표 1호] 지정 및 변경수수료

(단위 : 천원)

업종	지정			지정변경	비고
	접수비	심사비	계		
식육포장처리업	200	460	660	100	출장비 별도
식육가공업	200	460	660	100	"
유가공업	200	460	660	100	"
알가공품	200	460	660	100	"
식육판매업*	대	200	230	430	"
	소	200	120	320	"
보관업	200	460	660	100	"
운반업	200	460	660	100	"
집유업	200	460	660	100	"
가족사육업	200	-	200	100	"

* 식육판매업의 대·소구분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에 등록된 영업장면적이 66㎡ 이상인 경우는 대, 66㎡ 미만인 경우는 소에 해당한다.

* VAT 별도

[별표 2호] 지역별 출장비 내역

(단위 : 천원)

지역		출장비	비고
경기도		40	1일 출장
강원도		125	2일 출장
충북		115	2일 출장
총 남	천안, 당진, 아산	47	1일 출장
	그 외 지역	117	2일 출장
전북		135	2일 출장
전남		167	2일 출장
경북		160	2일 출장
경남		188	2일 출장
제주		237	2일 출장

* 1인 출장기준 금액임.